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2서식] <신설 2024. 2. 15.>

# (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)주택
#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① 입회 희망일<br>(년/월/일) | 2026.10.26(월) | | | |
| 신청인 정보 | ② 성명 | | ③ 생년월일 | |
| | ④ 주소 | (전화번호: ) | | |
| 근거법령 |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9조제1항<br>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2항 | | | |

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입회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**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쌍용건설(주)** 귀하

| | |
|---|---|
| 첨부서류 | 입주계약서 사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 |

※ 측정결과는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(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,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,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)에 공고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